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윤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851

발의연월일: 2020. 11. 2.

발 의 자:김윤덕·박상혁·정춘숙

윤후덕 · 강훈식 · 민병덕

신동근 · 임종성 · 윤재갑

이정문・황 희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시장·군수등이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과 정비를 위해 빈집실태조사를 기초로 하여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해당 계획에 따라 시장·군수등 또는 빈집소유자 등이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이와 관련하여 빈집정비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이에 필요한 비용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빈집 현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또한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거나 공익상 유해한 빈집에 대해 안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고 시장·군수등이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시 빈집의 수용·사용의 근거가 없어 효율적인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빈집정비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비

용지원 근거를 마련하며, 공익상 유해한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, 공공의 필요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빈집의 수용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를 개선·보완하여 효율적인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시장·군수등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시행하도록 함(안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등).
- 나. 시장·군수등이 공익상 유해한 빈집에 대해 소유자에게 명할 수 있는 조치에 안전조치를 추가함(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등).
- 다. 시·도지사는 시장, 군수,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빈집정비계획 수립과 실태조사, 빈집정비사업 등에 필요 한 비용을 보조·융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4조제1항 신설 등).
- 라. 시장·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공공의 필요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구역에 있는 빈집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6조의2 신설).
- 마. 시장·군수등은 빈집의 안전조치,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에게 그 조치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(안 제65조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윤덕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4815호)의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수립·시행할 수 있다"를 "5년마다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시장·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1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 을 재검토할 수 있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실시할 수 있다"를 "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시장·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·군수등이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④ 시장·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빈집의 상태 및 위해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빈집의 등급 을 산정하여야 한다.

제11조의 제목 중 "철거"를 "철거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"그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"을 "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안전조치, 철거 등(이하 "철거등"이라 한다)"으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그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"을 "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철거를 명한 경우 그 빈집"을 "철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해당 빈집"으로, "그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"를 "해당 빈집에 대하여 철거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"로 한다.

제13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·물건 또는 권리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·주소

제4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"지방자치 단체는"을 "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"으로 한 다.

- ① 시·도지사는 시장, 군수,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
- 1.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 수립 비용

- 2.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비용
- 3. 제9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비용
- 4. 제43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비용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46조의2(빈집의 수용 또는 사용) ① 시장·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공공의 필요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빈집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토지·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빈집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 다만, 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에 따라 제13조제6호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·물건 및 권리의 세목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(시장·군수등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의고시를 말한다)가 있는 경우에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.
 - ④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제1항 및 제

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(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포함한다)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가 이내에 하여야 한다.

제6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65조(이행강제금) ① 시장·군수등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.
 - ② 시장·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·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한다.
 - ③ 시장·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·부과사유·납부기한·수납기관·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.
 - ④ 시장·군수등은 최초의 조치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 - ⑤ 시장·군수등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,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.
 - ⑥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

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징수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) 제6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4조(빈집정비계획의 수립) ① 제4조(빈집정비계획의 수립) ① 시장・군수등은 빈집을 효율적 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는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(이 하 "빈집정비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 · 시행할 수 있다. <단서 5년마다 수립・시행하여야 한 신설> 다. 다만, 국토교통부장관이 요 청하거나 시장・군수등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빈집 정비계획 수립 후 1년마다 해 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. 1. ~ 5. (현행과 같음) 1. ~ 5. (생 략) ② ~ ⑧ (생 략) ② ~ ⑧ (현행과 같음) 제5조(빈집등 실태조사) ① 시장 제5조(빈집등 실태조사) ① ----•군수등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(이하 "빈집등"이 라 한다)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관한 조사(이하 "실 태조사"라 한다)를 실시할 수 -----<u>5</u>년마다 실 시하여야 한다. 다만, 국토교통 있다. <단서 신설> 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시장・군

1. ~ 5. (생 략) ②·③ (생 략) <u><신 설></u>

④ (생 략)

제11조(빈집의 <u>철거</u>) ① 시장·군 수등은 빈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빈집정 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빈집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건축 법」 제4조에 따른 지방건축위 원회(이하 "지방건축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그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 치를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빈 집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

	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
	경우에는 시장・군수등이 수시
	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	1. ~ 5. (현행과 같음)
	②・③ (현행과 같음)
	④ 시장·군수등은 제1항에 따
	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
	빈집의 상태 및 위해성 등 대
	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
	라 빈집의 등급을 산정하여야
	한다.
	<u>⑤</u> (현행 제4항과 같음)
제	11조(빈집의 <u>철거 등</u>) ①
	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안전조
	치, 철거 등(이하 "철거등"이
	<u>라 한다)</u>
	해당 빈집
	<u>소유자에게 철거등</u>

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 하여야 한다.

- 1. 2. (생략)
- ② 시장·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빈집의 <u>철거를 명한 경우</u> 그 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.
- ③ ~ ⑥ (생 략)
- 제13조(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) 지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다만, 제3호 및 제4호는 제9조제4호의 방법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.
 - 1. ~ 5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6. (생 략) 제44조(보조 및 융자) <신 설> >

· 1.•2. (현행과 같음)
②
철거등 필요한 조치
를 명한 경우 해당 빈집
해당 빈집에 대하여 철거
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제13조(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)
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・물
건 또는 권리의 세목과 그 소
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·주소
<u>7.</u> (현행 제6호와 같음)
제44조(보조 및 융자) ① 시·도
지사는 시장, 군수, 자치구의
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

지방자치단체는 시장・군수등 ② 시・도지사, 시장・군수 또 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 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자・융자 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. <신 설>

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 할 수 있다.

- 1.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 수립 비용
- 2.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비용 3. 제9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비용
- 4. 제43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비 용
- 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-----

제46조의2(빈집의 수용 또는 사 용) ① 시장·군수등 또는 토 지주택공사등은 공공의 필요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빈집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

토지·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 는 사용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빈집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 다만, 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 로 정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라 제13조제6호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·물건 및 권리의 세목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(시장·군수등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)가 있는 경우에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.

 ④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「공

<신 설>

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 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(사업 시행계획변경인가를 포함한다) 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.

제65조(이행강제금) ① 시장·군수등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.

② 시장·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·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.

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·부과사유·납부기한·수납기관·불 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

야 한다.

- ④ 시장·군수등은 최초의 조 치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 위에서 그 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- ⑤ 시장·군수등은 제11조제1 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 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 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 를 중지하되, 이미 부과된 이행 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.
- ⑥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 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 니하면 「지방행정제재・부과 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징수한다.